

대출안심서비스특약 약관

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

목 차

제1조 【목적】	3
제2조 【대출안심서비스의 정의 및 적용대상】	3
제3조 【대출안심서비스의 신청 및 적용】	3
제4조 【대출안심서비스 신청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지정】	4
제5조 【특약내용의 변경 등】	5
제6조 【특약 보험료의 납입】	5
제7조 【계약자의 임의해지】	5
제8조 【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】	5

대출안심서비스특약 약관

※ 약관조항에 대한 '해설' 또는 '사례'는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한 것으로 약관조항의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.

제 1 조 【목적】

이 서비스특약(대출안심서비스특약을 말하며, 이하 ‘서비스특약’이라합니다)은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가 보험계약자(이하 '계약자'라 합니다)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(이하 '주계약'이라 합니다) 및 특약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.

제 2 조 【대출안심서비스의 정의 및 적용대상】

① 대출안심서비스란 이 서비스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한 보험금 이내에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채무를 상환하여 드리는 서비스(이하, ‘대출안심서비스’라 합니다)를 말합니다.

② 다만,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및 특약에서 약정한 보험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 서비스특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1. 보험기간 중의 특정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금 : 중도보험금 등
2.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금 : 만기보험금 등

③ 이 서비스특약을 부가하여 대출안심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합니다.

【해설: 금전소비대차계약】

금전소비대차계약이란 돈을 빌려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돈을 일정 기일에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.

제3조 【대출안심서비스의 신청 및 적용】

① 대출안심서비스는 주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가

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.

② 계약자는 대출안심서비스 신청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
③ 대출안심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④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안심서비스는 그때부터 종료됩니다.

1. 주계약이 해지,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된 경우

2. 보험기간 중 이 서비스특약을 부가한 주계약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

3.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

4.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소멸된 경우

⑤ 다만, 제4항 제4호에 따라 대출안심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에는 제1항에 따라 대출안심서비스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 【대출안심서비스 신청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지정】

① 이 서비스특약을 부가한 주계약 및 특약에서 약정한 보험금 중 채무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보험수익자는 이 서비스특약을 부가한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수익자에도 불구하고,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신용제공기관(물품 또는 금전 등의 신용을 제공하는 기관) 또는 신용보증기관(신용제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제공 받는 채무자 집단의 채무액을 보증하는 기관)으로 합니다.

② 이 서비스특약을 부가한 주계약 및 특약에서 약정한 보험금이 채무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채무상당액 초과액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 초과액의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, 그 외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.

③ 이 서비스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에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약정한 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약정한 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, 그 외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.

제 5 조 【특약내용의 변경 등】

- ① 계약자는 제 4 조(대출안심서비스 신청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지정) 제 2 항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 4 조(대출안심서비스 신청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지정) 제 2 항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으나,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③ 계약자가 제 2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.
- ④ 이 서비스특약을 부가한 주계약 및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계약의 내용을 적용합니다.

제 6 조 【특약 보험료의 납입】

이 서비스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.

제 7 조 【계약자의 임의해지】

- ① 계약자는 이 서비스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서비스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【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】

이 서비스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